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81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이헌승 · 이성권 · 김소희
송석준 · 이종배 · 박덕흠
김 건 · 유용원 · 김선교
서지영 · 김도읍 · 김재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경우 계약자의 손실부담에 관한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계약 승계과정에서 부실계약을 이전받는 보험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에 보험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보험회사가 이전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강제적 계약 이전만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처분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4조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관한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보험업법」 제143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8항 중 “본다”를 “보며,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3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 본문 중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를 “인수금융기관이 승계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